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질의답변서**

질의 1.

본문내용

- 2) 사업내용
 - 사업 구간: <u>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u>*~경기도 부천시~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특별시 강서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홍대입구역(서 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
 -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질의내용

•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추가 정거장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을 2개소로 제안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비용 증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 추가 제안이 가능합니다.

질의 2.

본문내용

- 2) 사업내용
 - 사업 구간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경기도 부천시~서울특별시 양천구~서울 특별시 강서구~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서울특별시 마포구~서울특별시 홍대입구역(서 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
 -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질의내용

· 최초대안 대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시점부 위치 변경 등에 따라 사업 구간 연장 축소가 필요한 경우,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합니다.

질의 3.

본문내용

- p.17
- (2) 공사기간
 - * (중략) ··· <u>용지보상기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u>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u>총민</u> 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등의 변경없이 공사착수일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p.49

8.5 민원처리

- ③ (중 략) … 당사자 사이에서의 분담비율을 본사업 실시협약으로 사전 확정하거나 사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분담함.
 - 민원 발생으로 인해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간접공사비의 증액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질의내용

· (2) 공사기간(p17) 內, 용지보상기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 비 등의 변경없이 공사기간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8.5 민원처리 ③항에서는 민원 발생으로 보상업무가 지연되어 간접공사비의 증액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서 동 조(8.5)에 해당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민원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보상업무 지연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의 증감분은 8.5조 민원처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용지보상기간의 증감 등으로 간접공사비 또는 총투자비 등의 증가분이 발생하더라도 주무 관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 다.

질의 4.

본문내용

• (1) 본사업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 중도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u>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u>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됨.

질의내용

· 일반적인 철도/도로 BTO 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보상비는 사실상 이행보증의 대상이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제외한 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사업비가 아닌 건설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5.

본문내용

· (2) 사업신청자는 <u>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이를 포함하여 제출</u>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부속사업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함

질의내용

• 본 사업신청서 평가계획서에는 부속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이 반영되지 않은 바 사업신청자 가 부속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 다. (예) 제4권 부대사업분야 or 제5권 재무분야

[답변]

• 부속사업계획은 제4권 "부대사업분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질의 6.

본문내용

· (2) <u>사업신청자는 건물형 출입구 및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사</u> 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하고

… (중략) …

* 단, <u>건물형 출입구 부지 중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등의 부지에 한</u>하여 주무관청이 보상 비용을 부담하며

… (중략) …

(7) <u>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건물형 출입구 부지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보상하여야 하고,</u>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는 6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무관청 이 부담하는 보상비(670억원) 초과분을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 외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비 초과 제안이 가능함.

질의내용

· 건물형 출입구 부지를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보상할 경우, 보상이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본 사업 추진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부지 에 대한 보상업무 등을 주무관청에 위탁·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부대사업에 대한 보상 업무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보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단,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건물형 출입구 부지 중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등의 부지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보상 비용을 부담하며, 이 경 우에도 전체 보상비는 6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입구 부지의 경우 주무관청에 보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7.

본문내용

- (2) 사업신청자는 건물형 출입구 및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사 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사 업을 제안할수 있음. 특히 사업대상지 인근 공공택지 또는 국·공유지르 로할용 및 개발하는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함. 부대사업과 관련된 보상 의무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 단, 건물형 출입구 부지 중 본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등의 부지에 한 하여 주무관청이 보상 비용을 부담하며,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는 67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질의내용

· 건물형 출입구를 활용한 주택 공급시,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을 위한 건물형 출입구 인접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차장 설치 제외 등의 관련법령 변경 및 기준완화를 위한 행정적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관련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안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8.

본문내용

· (2) 사업신청자는 건물형 출입구 및 이를 활용한 주택공급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부대사업의 업계획을 제안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제안할수 있음. 특히 사업대상지 인근 공공택지 또는 국·공유지르 로할용 및 개발하는 부대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함. 부대사업과 관련된 보상 의무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 (참고) "청년 공공주택 품을 철도역사 짓는다('21.1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질의내용

· (참고)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역사 짓는다(21.1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철 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 경기주택 도시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4 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특례 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취득 후 공공사업자에 게 매각할 수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관련법령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제안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9.

본문내용

• (9)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대사업을 시행하며,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 익이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순이익 미달분을 처리•부담해야 함.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부대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건설보조금의 5%를 감액 조정하고,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은 증액하지 않음.

질의내용

·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부대사업 중 일부에 한해서만 부대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보조금의 5% 감액 조정이 아닌, 일부만(예시, 2.5%) 감액 조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보조금 감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0.

본문내용

• (9)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대사업을 시행하며,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순이 익이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순이익 미달분을 처리•부담해야 함. 사업신청서에 제안한 부대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으로 정하는 건설보조금의 5%를 감액 조정하고,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은 증액하지 않음.

질의내용

• 법제도변경 등 사업시행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안한 부대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도 건설보조금의 감액 조정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보조금 감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1.

본문내용

·(8) 총사업비: 본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u>각종 세금과 공과금</u>, 영업준비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함.

질의내용

·본 사업은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으로 구성된 혼합형 민자사업으로 임대형 부분에서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의 성격에 대한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면세의 여부가 달 라집니다.

(제1설) 본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7호에 규정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면 세사업자이며,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정부가 분할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에 해당하므 로 전체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함

(제2설) 본 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동일하게 본 사업시설 임대에 따른 시설임대료이므로, 임대형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형 부분(건설보조금 50%, 혼합비율 50% 가정시 25%)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됨을 가정하여 총사업비에서 제외함

임대형 부분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여부는 과세관청에 의해 최종 판단될 것이나 본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임대형 부분의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 다. 본 사업 제안시 임대형 부분의 매입세액불공제액의 총사업비 반영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질의 중 1설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향후 과세관청의 판단이 이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준용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2.

본문내용

• (10) 건설보조금 투입조건 : 사업신청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u>자기자</u> 본을 전액 투입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조건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u>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u> 다만, 실제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은 공사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최종 건설보조금 지원 비율은 실시협약으로 확정하는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질의내용

· 건설보조금 금액을 균등배분 투입으로 가정할 경우 사업제안자의 공사공정률에 따라 총사업비보다 건설보조금이 더 많은 분기가 발생하여 특정분기에 마이너스 민간사업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간 후반부에 음(-)의 민간사업비가 발생 시 총민간투자비와 민간재원조달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사업신청서 작성시 특정 분기에 민간사업비 및 민간재원조달이 음(-)의 금액이 되어도 무 방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분기별로 건설보조금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3.

본문내용

• (10) 건설보조금 투입조건 : 사업신청자가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청하는 경우 <u>자기자</u> 본을 전액 투입한 후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조건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건설보조금은 가격산출기준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정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u>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u>. 다만, 실제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은 공사 공정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시협약으로 정하며, 최종 건설보조금 지원 비율은 실시협약으로 확정하는 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할수 없음.

질의내용

· 건설보조금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분기인지, 자기자본이 전액 투입 완료되는 해당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투입되는 조건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자기자본 투입이 완료된 다음 분기부터 건설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업신청 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14.

본문내용

• ② 사업신청자가 정거장(11개소 이상) 및 <u>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4량 이상) 증대</u>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추정 총사업비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보상비670억원 포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음.

질의내용

• 열차 1편성당 소요량수(4량 이상) 증대 이외, 열차 편성수 증대에 따른 소요량수 증대를 제 안하는 경우에도 추정총사업비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불변기준, 보상비670억원 포 함)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제안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 다.

[답변]

· 열차 편성수 증대에 따른 소요량수 증대를 제안하는 경우 추정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사업비 증액 제안이 가능합니다. 이때 총사업비 증액 제안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보조금 및 정부지급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자는 추정 건설보조금 8.171억원 및 추정 임대형 부분 건설사업비 4.477억원을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습니다.

질의 15.

본문내용

- p.74
- (3)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p.5

- 17.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함.
- 18. 수익형 부분 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함.

질의내용

-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가격산출일을 본 사업 고시일(2022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제안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이 경우, '고시일(2022년 9월 16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의 물가 반영에 대하여 본 고시문 상의 물가변동률 연 2%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는지, 혹은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작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총사업비는 공고일(2022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실제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 및 건설투자 GDP Deflator)을 적용하여 총사업비 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질의 16.

본문내용

- · p.74
- (3) 물가변동률 : 연 2%를 기준으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되,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적용율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p.5

- 17.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함.
- 18. 수익형 부분 물가변동률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함.

질의내용

- 만일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수익형부분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CPI)을, 임대형 부분은 건설투자 GDP Deflator 변동분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실제 물가를 반영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월별로 지수가 고시되는 반면 건설투자 GDP Deflator의 경우 분기별로 지수가 고시됨을 감안하여 고시일 기준 가장 최근 발표된 실물가지수를 반 영(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22년 8월말, 건설투자 GDP Deflator의 경우 2022년 6월말)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이 경우, 고시일 이전 가장 최근 실적치 기준일과 고시일(2022년 9월 16일) 사이의 기간의물가지수 변동분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시: 2022년 8월말까지 실제 CPI적용하고 2022년 9월 1일~16일의 기간에는 8월 기준 CPI 와 9월 기준 CPI를 토대로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

[답변]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2019년 12월 31일)부터 공고일 직전 분기(2022년 6월말)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률(소비자물가지수 및 건설투자 GDP Deflator)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2%를 가정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질의 17.

본문내용

- · 사용료 : ··· (중 략) ···
- 본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별도운임은 이용거리가 증가하면 별도운임도 증가하는 거리비 례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신청자가 이용거리 1km당 별도운임을 제안하여 야 함.
- 사업신청자는 본사업구간 내 모든 정거장 간 운임(기본운임+추가거리운임+별도운임) 수준 이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도시철도 (기본+추가거리)운임의 2.0배 이내가 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질의내용

• 본사업 공고문에 따라 별도운임은 이용거리가 증가하면 별도운임도 증가하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발휘하여 모든 정거장간 운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를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며, 동시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최장거리 기준 이용거리 1km당 요금으로 제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자가 운임체계를 제안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사용료 수준은 최장거리 기준 이용거리 1km당 운임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단,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개 정거장 이동시 부과되는 별도 운임은 본 제3자 제안공고 상 최장거리 이동시 부과가능한 별도운임 중 최저금액(52원/km×약18km=936원)의 50% 이내가 되도록 제안하여야 합니다.

질의 18.

본문내용

• (3) <u>첨두시(4시간) 배차간격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하되</u>, 비첨 두시 배차간격은 평균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구체적인 열차운영계획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질의내용

• 본 사업 공고문 상 첨두시(4시간) 배차간격을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으로 제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화 및 광역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첨두시 배차간격을 5분 이하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첨두시 배차간격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으로 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적용할 배차간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19.

본문내용

· (13) 사업신청서 작성 시 관련기관 협의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가을철·겨울철 생태계조사 등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첨부토록 함.

질의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사업신청서의 제6권 환경검토보고서와 동일한 성과품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사업신청서 제6권 환경검토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동일한 성과품입니다.

질의 20.

첨부 1

- · (18) 규격 및 글자크기
- ①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작성시 한글은 모두 신명조체 12point, 영문은 Times New Roman 12point, 타이틀은 14~20point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줄 간격은 180%로 하여 분명하며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함.
- ② 설계도서 작성시 한글은 모두 신명조체 10.5point, 영문은 Times New Roman 10.5point, 제목은 12~16point, 줄 간격은 150%로 함.

질의내용

· 2. 사업신청서 작성방법(p.18) 규격 및 글자크기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6권 설계도서의 설계예산서(엑셀),수량산출서(엑셀),단가내역서(엑셀) 등은 한글 외 작성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신명조체와 줄간격 규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계도면 및 선로 종·평면도는 국가철도공단의 도면작성 및 관리절차서[첨부1, p.15]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내역서는 폰트와 줄간격을 제한 없이 작성하고, 설계도면 및 선로 종·평면도는 국가철도공단 도면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설계도서 중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내역서의 폰트와 줄간격은 제한없이 작성하고, 도 면은 국가철도공단의 도면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질의 21.

첨부 1

(15) 공사비내역은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12,29,)"을 준수하여 산출하고, <양식32>를 작성하여 제출함>

질의내용

• 예정가격작성기준 최신예규는 제577호(2021.12.01.)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예규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2020.12.29.)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최신 예규인 제577호('21.12.1.)를 준수하여 산출합니다.

질의 22.

첨부 1

- · <양식9>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 · <양식10> 출자자의 재무상태표

질의내용

·출자자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별도 재무제표'인지 또는 '연결 재무제표' 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질의 23.

첨부 1

· <양식19-1>시공실적증명서

질의내용

· 발주기관별 전자 준공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활용 시, 해당 발주기관의 전자 준공실적증명 서로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해당 발주기관의 전자 준공실적증명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질의 24.

첨부 1

-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 다.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질의내용

· 실적증명서 제출과 관련 발주기관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이미 발주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내용으로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 제출이 생략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합니다.

질의 25.

첨부 1

·<양식22>총사업비 산정~<양식30>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요구액 및 시기 산정

질의내용

· <양식22>~<양식25>,<양식 26-2> 및 <양식30>의 경우 단위를 백만원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양식26-1>.<양식27>~<양식29>의 경우 단위를 억원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양식22>~<양식25>,<양식 26-2> 및 <양식30>의 단위를 억원 단위로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양식22>~<양식25>.<양식 26-2> 및 <양식30>의 단위는 억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질의 26.

첨부 1

· <양식31-2> 재무모델

주)1. 시설임대료는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함.

질의내용

· <양식31-2>의 주1)에서는 시설임대료를 산정 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총민간투 자비에서 차감한 후에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공고문 본문 P76에서 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본 사업과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양식31-2>의 시설임대료 작성 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양식31-2>의 시설임대료 산정시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산정하며, 주1)의 문구를 삭제하여 제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양식 31-2>의 시설임대료는 ①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과 ② 부대사업 순이익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한 금액 두 가지 모두를 병기하여 작성합니다.

질의 27.

첨부 2

· (2) 출자자 중 대한건설협회가 공시한 "2022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토목건축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에 속하는 4개 업체 이상은 <u>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u> 수 없음.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개 업체 이하로 출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본 사업의 시공 참여를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 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단순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8.

첨부 2

- · ①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아래 ② 또는 ④ 조항을 만족하여야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⑦ (중략) ··· 이 공고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출자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단, 회사채 및 기업어음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질의내용

·회사채 및 기업어음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고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 혹은 제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사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질의 29.

첨부 2

- ·①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모든 투자자는 아래 ⑦ 또는 ⓒ 조항을 만족하여야 재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중략) … (재무제표에 대한 과거 5년간 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
 - 과거 5년간 ··· (중략) ··· 기준으로 함(감사받은 기간이 5개년 미만인 경우 감사받은 해당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며, 감사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등 확인원을 부속서류로 제출함).

질의내용

•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공시되는 감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출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부산시, 서울시 등)에서 공고한 RFP에 기재되어 있고, 국토부에서 공고한 도로공사의 경우(오산용인, 사상해운대) 해당 문구가 없음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질의 30.

첨부 2

-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최근 10년간 철도 분야 공사 시공 누계실적이 10km 이상인 자(복선 시공 실적만 인정)가 시공하여야함.
 -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함.
 - <u>시공 누계실적 산정시에는 사업연장에 해당 시공업체의 지분율을 곱하여 시공 실적을</u> 산정함.

질의내용

· 시공 누계실적 산정은 사업연장에 해당 시공업체의 지분율을 곱하여 시공 실적을 산정하는바, 지분율은 기 시공현장의 지분율을 의미하는지 또는 당해 공사의 참여 지분율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시공 누계실적 산정시 지분율은 기 시공현장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질의 31.

첨부 2

• p.1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10 |
| (20) | •궤도설계기준, 공법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10 |

p.26

- (5) 궤도(20점)
- ① 궤도 분야 설계ㆍ시공의 적정성(10점)
- ② 궤도 분야 주요 자재선정 및 성능확보방안 수립 여부(10점)

질의내용

· 궤도분야 p.1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요소와 (5) 궤도 본문 내용이 다릅니다. 궤도 배점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궤도 분야 설계 • 시공의 적정성(10점), 궤도 분야 주요 자재선정 및 성능확보방안 수립 여부(10점)으로 평가합니다.

질의 32.

첨부 2

· p.3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추정 방법(15점)
- (2) 이용자 편익(40점)
- (3) 수요 추정결과 및 수입 추정결과(45점)

[본문] p.83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교통수요 (100) |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 추정방법 | 20 |
|---------------|-------------------|----|
| | 이용자 편익 | 40 |
| | 수요 추정결과 및 수입 추정결과 | 40 |

질의내용

·교통수요분야 첨부2(p.35) 2.3.1 교통수요분야 평가요소와 본문(p.83)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상이합니다. 교통수요분야 배점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 기초자료 분석 및 수요 추정방법(15점), 이용자 편익(40점), 수요 추정결과 및 수입 추정결과 4(45점)으로 평가합니다.

질의 33.

첨부 2

· (1) 주택 공급호수(15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주택 공급호수 평가산식]

 $Y = \frac{$ 제안공급호수(호)}{최대제안공급호수(호)} $\times 15$

주1)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정거장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입지한 주택의 제안 공급호수를 대상으로 평가함.

질의내용

• 제안 공급호수로 산정되는 건축물 유형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제안 공급호수로 산정되는 건축물 유형에 주거형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질의 34.

본문내용

· (1) 주택 공급호수(15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주택 공급호수 평가산식]

 $Y = \frac{$ 제안공급호수(호)}{최대제안공급호수(호)} $\times 15$

주1)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정거장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입지한 주택의 제안 공급호수를 대상으로 평가함.

질의내용

· 주택단지 제안 시, 사업신청자가 제안하는 단지의 경계선이 정거장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입지할 경우 제안 공급호수 대상으로 포함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주택단지의 경계선 중 일부가 500m 이내에 입지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급호수를 평가합니다.

질의 35.

첨부 2

· (2) 부대사업 이익 공유(15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신청자 간 상대평가함

 사업신청자는 제안주무관청귀속분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사용료 인하 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Y = \frac{\text{제안주무관청귀속분의 현재가치(원)}}{\text{최대제안주무관청귀속분의 현재가치(원)}} \times 15$

- 주1) 부대사업 이익은 순이익으로, 비용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산정함.
- 주2) 실질할인율 4.5%를 적용한 불변가격시점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함.

질의내용

• 부대사업 이익 중 주무관청 귀속분 평가산식에 따르면 부대사업 순이익을 산정 시 비용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는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의 성격으로 부대사업 순이 익 산정에 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합리적인 바, 부대사업 순이익에 본 사업(본 사업시설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출입구 부지)의 보상비를 제외한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를 비용으로 포함해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부대사업 순이익 산정시 본사업 보상비(670억원) 외 부대사업 관련 보상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합니다.

질의 36.

성과요구수준서

·노선 선정은 건축물을 통과하지 않는 등 보상비 및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 및 연계운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선로제약조건, 구조물 입지여건, 환승동선 등을 고려하여 노선 계획 시 건축물 하부통과 및 사유지 저촉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바,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 하부통과 및 사유지 저촉이 허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사업신청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보상비 및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노선을 제안 하고, 관련 민원 대응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향후 민원 처리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37.

성과요구수준서

• 환승은 유료구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요금체계가 상이한 구간은 환승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대장홍대선 정거장과 인접한 환승대상 정거장의 여건상 유료구역에서 환승이 불합리한 경우 다른 환승방식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모든 환승정거장은 유료구역 환승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38.

성과요구수준서

• 열차제어시스템은 무인·유인 운전 방식에 따라 ETCS 시스템 요구사양서, IEEE 표준, 한 국철도표준규격(KRS)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ETCS 시스템은 국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등에 적용되는 유인운전에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본 구간의 무인운전에 적합하지 않는 사양서로 사료되는바, "ETCS 시스템 요구사양서"는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ETCS 시스템 요구사양서에 맞는 국내 신호시스템은 KTCS-1 및 KTCS-2 시스템으로 유 인운전에 적합한 시스템 임)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39.

성과요구수준서

- · 선로부에는 승무원이 승강장안전문을 조작에 의한 강제 개폐조작이 가능하고 도어상태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열차 운영시 승무원이 열차의 정위치 정차 위치와 승객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무인운전일 경우 승무원이 없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이행에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

질의 40.

성과요구수준서

· 사업신청자는 차량 및 시스템제작 계획, 차량 및 시스템공급 조직구성 계획, 차량 및 시스템의 기술자료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차량 및 시스템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차량 및 시스템 수급계획서는 일반적으로 구매계약 시 실제 제작 및 납품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는 도서이며, 사업신청서에는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차량 및 시스템 수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구체적 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합니다.